



인권과 평등
Yes!



폭력과 갑질을
Out!

함께 만드는 인권 존중 캠퍼스

폭력예방 가이드북

전남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폭력과 갑질없는
인권존중 캠퍼스를
만들어 갑니다.

함께 만드는 인권 존중 캠퍼스

폭력예방 가이드북

CONTENTS

- 04 인권
- 06 성희롱
- 08 성폭력
- 11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1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유형
- 14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생활수칙
- 16 성희롱 발생 맥락 예시에 따른 예방수칙
- 17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피해)
- 18 성폭력 피해 시 피해자 대응 방안

인권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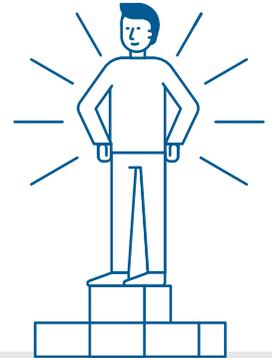
성별, 연령, 종교, 사상, 학력, 장애, 가족 상황, 병력,
출신 지역 또는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및 개인 정보에 대한 간섭,
종교·신념·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
배제·간섭·제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폭언, 욕설,
모욕 등의 방식으로
신체적·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인권침해 사례

1. 지속적인 부탁을 가장한 명령(교직원과 학생, 선배와 후배 등 수직적인 관계)
 2. 부당한 제재를 통한 강제 근로(정당한 대가 없이 일을 시키거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3.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업무와 무관한 호텔 예약·변경 요구, 개인 연구 관련 비용 처리, 교직원 자녀 과제 처리, 사적인 공간 청소 등)
 4. 선·후배 간 군기 문화(인사 강요, 음주 강요, 군대식 말투 강요, 선물 강요, 두발 및 복장 강요, 얼차려 등)
- 강제적인 장기자랑 또는 춤 연습 강요(형법상 강요죄 해당)
 - 학생 행사 강제 참여(개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전화 통화, 온라인 메신저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PC, 태블릿, 이메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됨)
-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그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바로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

2. 항의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기술하고, 당시 나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추후 필요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성희롱 당시의 날짜, 시간, 장소, 주변 환경,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잠깐!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핸드폰 메시지, 메신저 내용은 삭제하지 마세요.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헌법(제10조)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출발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1. 수면 중이거나 술 취한 상대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2.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나이, 성별, 학번 등)를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행위
3. 관심과 친근감의 표시라며 불필요한(몸을 기대거나 머리, 얼굴, 어깨, 허리, 허벅지 등을 일방적으로 만지는) 신체 접촉 행위
4.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관점에서 말하는 행위
5.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性的)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여 말하는 행위
6.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장난으로 특정 신체 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7. 원하지 않음에도 연인 사이처럼 느껴지는 호칭을 부르는 행위
8. 가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캔하듯이 쳐다보는 행위
9.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10. 노래방에서 노래나 러브 샷,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에 매개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한다. 또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디지털 성폭력 유형

-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 후 게시(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
-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합의하에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유포)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게시
- 동영상 촬영물의 재유포 및 제3자 유포(최초 유포 이후 원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
- 유포 협박(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내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적 명예 훼손, 게임 내 성적 모욕, 명의 및 사진 도용)
- 에브리타임 등과 같은 SNS 등에 음란사진이나 음담패설 내용과 함께 타인의 전화번호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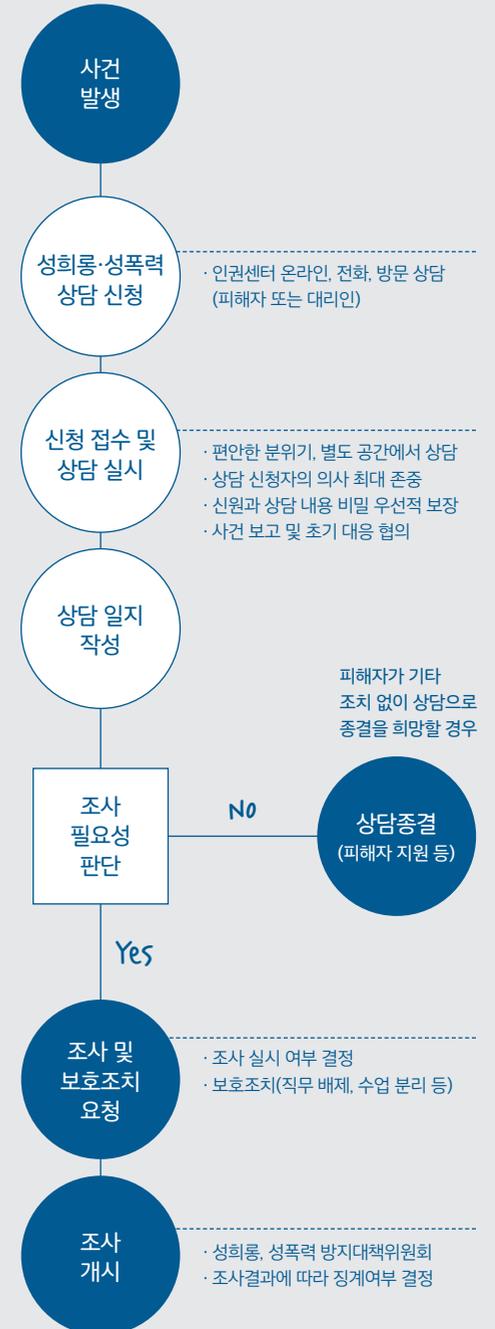
데이트 성폭력

- 연애 관계, 혹은 데이트 중에 일어난 상대가 원치 않는 모든 성적 언행을 포함하는 개념
- 사귀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의 언행 (상대에 대한 관심과 폭력·구속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
- 호감을 가진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락 (메일, 전화, 문자 등)을 취하여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의 언행 (상대에 대한 관심과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 필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신고
대상 : 전남대학교 구성원(신고인 또는 피신고인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방법 :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상담
상담자는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진행 절차 및 피해 구제 등 관련 정보 제공(익명 상담 가능) 상담 결과 학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 신고서 접수(진술서 첨부)



박생 유형

학생 &

학생

→ 대학 내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MT나 술자리, 강의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여학생들을 남학생 옆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경우
- 술자리, 강의실 등에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MT, 축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에서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쾌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등

→ 데이트 성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인

- 여성 혹은 남성이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실행하는 경우
- 의식 없는 가운데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계속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
-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성행위에 응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해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교직원

&

교직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불편함, 고용상의 불이익 (해고, 부당한 업무 부과)을 당하기도 하며, 이런 상황을 극복 할 수 없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직장 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고용, 승진 등을 빌미로 성적 언행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의사를 내비치거나 직접 행하는 경우
- 성적 언행으로 위협적 ·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 학생

교직원

→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이들 사이의 수직적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교수에게 지도 받는 대학원생, 조교, 수강 학생인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행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교수의 역할과 직책은 명확하게!



- 교수는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고, 상담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받는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p.19)

생활수칙

예방을 위한

- ①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삼간다.
- ②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한다.
- ③ 음주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주 게임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 ⑤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⑥ 사생활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지 않는다.
- ⑦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다.
- ⑧ 모임이나 뒷풀이는 밀폐된 장소가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한다.
- ⑨ 고정된 성 역할과 나이(선후배)를 강조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 ⑩ 성희롱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가해자를 저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행위자² 위한

- 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②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 ③ 나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행위자인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 ④ 변명은 더 큰 잘못을 낳게 되므로 삼간다.
- ⑤ 상대는 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한다.
- ⑥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최선의 방법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 ⑦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소문이 퍼져 상대가 힘들게 됨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 ⑧ 이후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소의 생각이나 태도를 돌아본다.

동료² 위한

- ① 성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 ② 피해자를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는다.
- ③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고 정색한다.
- ④ 피해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 ⑤ 누군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거짓 소문을 말할 때 제지하고, 만약 직접 제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맞장구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 ⑥ 문제가 심각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한다.

<출처 - 영화(리틀 포레스트) 촬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예방수칙

연구실에서

- ① 특정 학생에게만 지나치게 친밀하게 대하거나 학업 지도나 추천 등에서 특별 혜택을 준다는 인상 금지
- ② 1:1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때 사제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 ③ 학생 면담에서 학생이 울 때, 위로 차원에서 다독거린다는 생각으로 신체 접촉은 삼가기
- ④ 1:1 개인 면담을 하는 경우 가급적 공개되었지만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면담 진행하기
- ⑤ 교외 또는 늦은 시간 만남, 논문 지도, 레슨, 학회 참석 요구 등 학생은 교수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요하지 않기

강의실에서

- ① 성비하적, 성차별적 발언 금지
- ② 외모에 대한 비유, 평가 금지
-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성적 농담 금지
- ④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경우 사전에 안내하여 수업 진행 상의 불편함 방지
- ⑤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어 설명할 때 성 평등적 관점에서 적절한 예를 제시
- ⑥ 학생에게 이성친구와 관련된 사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식사 자리에서

- ① 학생과의 식사는 되도록 교내, 혹은 학교 주변에서 간단히
- ② 늦은 시간의 1:1 저녁식사는 피하기
- ③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으며, 2차로 노래방을 가거나 학생과 동석한 자리에서 도우미를 부르지 않기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피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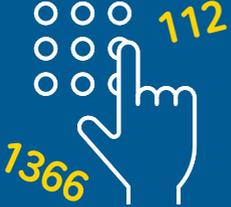
2차 가해(피해)의 유형

- ① 행위자에 의한 피해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② 조직구성원에 의한 피해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이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사건을 선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 시 피해자 대응 방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p>대응하기 증거 확보와 신체적 안전 확인을 위해 응급대응 고려</p>	<p>신고하기 위급상황은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는 1366</p>	<p>방문하기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빠른시간 내 해바라기센터(1899-3075)</p>

응급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초기 진술 확보

- 피해 후 빠른 시간 내에 성폭력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의논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 확보

- 신체에 남는 증거들(가해자의 음모, 정액, 타액, 콘돔 성분 등),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증거, 피·가해자 이동 환경에서의 CCTV 자료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옷을 갈아입지 마세요. 갈아입더라도 털지 말고,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해주세요.
- 피해 후 늦어도 72시간 이내에는 증거를 채취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상담전화 1331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성폭력 광주여성의 전화 062-363-7739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실 062-521-1366
광주해바라기센터 1899-3075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062-232-1375
여수성폭력상담소 061-666-400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출 촬영물 삭제,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고 상담원만 확인 가능하며 비밀 보장
www.women1366.kr/stopds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